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8.

발 의 자 : 강대식 · 박준태 · 백종헌
고동진 · 김상훈 · 최수진
유용원 · 한기호 · 구자근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신질환자, 마약류 중독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시·도지사가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시·도지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2제3항 등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2제3항 단서 중 “제39조의13에”를 “제39조의13제1항에”로 한다.

제39조의13의 제목 중 “결격사유”를 “결격사유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,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의14제1항제1호 중 “제39조의13”을 “제39조의13제1항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 · 자격증의 교부 등) ① · ② (생략)	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 · 자격증의 교부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<u>제39조의13에</u>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9조의13제1항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<u>결격사유</u>) (생략)	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<u>결격사유 등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을 받은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</u>

<u><신 설></u> 제39조의14(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) ① 시·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<u>제39조의13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. ~ 5. (생략) ②·③ (생략)	<u>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,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39조의14(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1. <u>제39조의13제1항</u>----- ----- 2. ~ 5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-